연구자료 D95/1994. 12
번역 자료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권 태 진(부연구위원)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번역
이 두 순(부연구위원) 제3부, 제4부 번역 및 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최근 국제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각국의 지적소유권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신 품종을 보호하고 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이미 타결된 바 있다. 1961년에 창설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을 시도하였으며, 1991년에는 새로운 조례를 결정하여 현재 회원국의 비준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동 기구에 가입할 경우 국내법을 동 기구가 요구하는 규정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종자 인증제도는 식물 신품종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회원국이 아니나 부분적으로는 국내법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종자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책자는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1991 개정판과 1993년 9월에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된 「UPOV 협약하에서의 식물 품종 보호를 위한 논리적 근거와 그 성격에 관한 지역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일부를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 제2부에서는 세계 식물 품종 보호의 개관, 제3부에서는 식물 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4부에서는 품종 보호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소개하였다.

이 자료는 「농작물 종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를 좀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목 차

제 1 부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

1.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 ····· 1
2. 왜 새로운 식물 품종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 4
3.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란 무엇인가? ····· 4
4. UPOV의 「1978 조례」에서 제공하는 육종가의 배타적 권리란 무엇인가? ····· 6
5. 특허권에 의한 신안보호와 식물품종보호제도에 의한 품종 보호가 어떻게 다른가? ····· 8
6. 어떠한 경우에 식물 품종 보호를 도입해야 하는가? ····· 9
7. 식물 육종가의 권리 보호가 식물 유전자원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 9
8. 식물 품종 보호가 국가 수준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10
9. UPOV 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 11
10. UPOV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 12
11. 식물 육종가가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가? ····· 13
12. 어떻게 UPOV의 회원국이 되는가? ····· 14
13. 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1991 조례」: 왜 개정이 필요했는가? ····· 15

제 2 부 세계 식물 품종 보호의 개관

1.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발전 과정 ····· 19

2. 보호되는 품종 ····· 23
3. 보호의 형태 ····· 27
4. 국가 수준에서의 UPOV 협약의 이행 ····· 30

제 3 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 정의 ····· 37
2. 계약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 39
3. 육종가의 권리 양도조건 ····· 40
4. 육종가의 권리 허가신청 ····· 42
5. 육종가의 권리 ····· 44
6. 품종의 명명 ····· 48
7. 육종가의 권리 무효와 취소 ····· 50
8. 연맹 ····· 51
9. 협약 이행과 기타 의결사항 ····· 56
10. 최종 결의사항 ····· 58

제 4 부 식물 신품종 보호의 기술적 기준

1. 품종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65
2. 개별적 기준 ····· 67
3. 검사 실시 ····· 73
4. DUS 시험의 합리화 ····· 82

표 목 차

제 1 부

표 1-1 연맹 회원국 현황(1993년 9월 15일 현재) ····· 7
표 1-2 특허권에 의한 보호와 식물 품종 보호에 의한 보호의 비교 ····· 8

제 2 부

표 2-1 UPOV 발전의 연대기표 ····· 20
표 2-2 UPOV 회원국별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및 품종 등록 현황, 1991 ····· 23
표 2-3 회원국별 보호대상 식물의 수 ····· 26
표 2-4 국별 주요 보호종 및 등록 품종 수 ····· 27
표 2-5 식물품종보호국의 업무 ····· 30
표 2-6 식물 품종 보호기관 형태별 실시 국가 ····· 33

제 4 부

표 4-1 샘플의 크기별 최대허용 변형수 ····· 79
표 4-2 보호를 위한 5가지 기준과 검사 방법 ····· 83

그 림 목 차

제 2 부

그림 2-1 식물 신품종 보호의 발전 과정 ····· 21
그림 2-2 UPOV 회원국의 지리적 분포 ····· 22
그림 2-3 UPOV 회원국의 식물 품종 보호
현황, 1991 ····· 24
그림 2-4 식물 품종 보호와 정부의 관련 기능 ····· 32

제 1 부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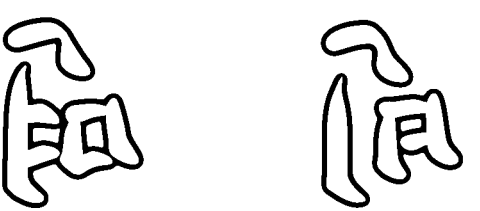

빈 면

제 1 부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

1.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

(1) 「식물 육종가의 권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식물품종보호란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주어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과 같은 지적소유권의 한 형태이다.

(2) 식물품종보호는 산업 신안품을 위한 특허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양자의 보호 형태는 모두 소유권자에게 창작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3) 식물품종보호는 저작권과 비교될 수 있다. 그것은 품종 소유자만이 보호를 받는 식물의 재생산(복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4) 식물품종보호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독립적인 특수 보호 형태로서 다른 지적소유권과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능적인 차이점도 있다.

2. 왜 새로운 식물 품종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1) 수량을 증대 시키거나 식물 내병충 저항성을 높여주는 등의 새로운 식물품종은 농업, 원예, 임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 요소이다.

(2) 새로운 식물품종을 육종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기술, 노동력, 자재, 자금면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많은 경우 새로운 식물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0~15년이란 기간을 요한다. 일단 새로운 품종이 공개되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재생산되어 그것을 개발한 육종가가 투자에 대한 적절한 이윤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3)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그 품종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육종가로 하여금 식물 육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농업, 원예, 임업 발전에 공헌하도록 한다.

3.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란 무엇인가?

(1) UPOV라고 알려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부간 조직이다. UPOV란 약어는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란 조직의 프랑스 이름으로부터 유래한다.

(2) UPOV는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1961년 파리에서 조인되어 1968년 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동 협약은 1972년, 1978년 및 1991년에 제네바에서 수정된 바 있다.

(3) 회원국들은 그 협약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라 국제적 조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식물품종에 대한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해 왔다.

(4)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1978년에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1978 조례」에 의해 구속된다. 「1978 조례」는 이미 서명은 되었으나 멕시코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및 우크라이나는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그들의 법률을 수정하였으며 칠레는 UPOV 협약의 「1978 조례」에 따라 법률을 수정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가까운 장래에 UPOV의 회원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많은 국가들이 현재 입법 단계에 있다. Andean Pack, CONASUR(라틴아메리카의 남부 국가들의 농업협력기구) 및 유럽연합은 현재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지역조약을 고려하고 있다.

(5) 「1978 조례」는 현재 발효중인 UPOV 협약이다. 1991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UPOV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새로운 수정된 「1991 조례」를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1991 조례」는 5개 국가가 그것을 비준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1991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경우 그 조례는 비준한 국가만을 구속하게 된다. 기존 회원국들은 그들 국가의 기존 법률을 수정하고 새로운 조례에 대한 승계 문서를 寄託해야만 새로운 「1991 조례」에 의해 구속력이 생긴다. 아직은 어느 회원국도 그러한 승계 문서를 기탁하지 않았으나 모로코,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은 「1991 조례」에 합치되는 법률이나 법률안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이나 Andean Pack의 지역계획안은 1991 수정안을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UPOV 회원국들은 현재 상당한 정도로 그들 법률을 수정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이 글의 내용중 앞부분은 「1978 조례」에 국한하여 설명하게 된다. 왜냐하면 「1978 조례」는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현존 UPOV 체제의 기초가 되며 모든 UPOV 회원국이 이 조례에 의해 구속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몇몇 새로운 회원국들은 이전의 조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면,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1993년에 UPOV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그들은 「1978 조례」에 따라 행동

하고 있다. (표 1-1)은 1993년 9월 13일 현재의 회원국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4. UPOV의 「1978 조례」에서 제공하는 육종가의 배타적 권리란 무엇인가?

(1) 육종가에게는 그가 개발한 품종을 상업적 유통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증식물질을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권리는 그가 개발한 품종의 증식물질에만 한정되며, 보호받고 있는 과수로 부터 생산된 과일과 같이 수확된 최종 생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권리는 단지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비상업적 목적으로 증식물질을 생산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민이 자신의 농장에 계속적인 파종을 위하여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는 육종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1961년 UPOV 협약을 마련할 당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이익과 농민이나 소비자등 신품종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도록 육종가의 권리 범위를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1-1 연맹 회원국 현황(1993년 9월 15일 현재)

국 가	가 입 일 자
호 주	1989. 3. 1
벨 기 에	1976. 12. 5
카 나 다	1991. 3. 4
체 코 공 화 국	1968. 10. 6
덴 마 크	1993. 4. 16
핀 란 드	1971. 10. 3
프 랑 스	1968. 8. 10
독 일	1983. 4. 16
헝 가 리	1981. 11. 8
아 일 랜 드	1979. 12. 12
이 스 라 엘	1977. 7. 1
이 태 리	1982. 9. 3
일 본	1968. 8. 10
네 델 란 드	1981. 11. 8
뉴 질 랜 드	1993. 9. 13
노 르 웨 이	1989. 11. 11
폴 란 드	1991. 12. 4
슬 로 바 키 아	1977. 11. 6
남 아 프 리 카	1980. 5. 18
스 페 인	1971. 12. 17
스 웨 덴	1977. 7. 10
스 위 스	1968. 8. 10
영 국	1981. 11. 8
미 국	

5. 특허권에 의한 신안보호와 식물품종보호제도에 의한 품종 보호가 어떻게 다른가?

표 1-2 특허권에 의한 보호와 식물 품종 보호에 의한 보호의 비교

보호의 종류	특허권에 의한 보호	식물품종보호
보호의 목적	산업적 발명	식물 품종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 문서 조사	필요	필요
2. 현장 조사	불필요	필요
3. 검사를 위한 식물체	불필요	필요
보호를 위한 조건	신규성 산업적 적용성 불명확성(발명 단계) 권능부여 명세	상업적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적절한 명칭
보호의 범위		
1. 보호의 범위 결정	특허청구에 의한 결정	국가의 법률에 의해 지정(UPOV 회원국의 경우 협약에 의함)
2. 후속적인 품종 육종을 위한 보호 품종의 이용	특허소유자의 추인을 필요	권리 소유자의 추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동일 농장에 계속적 파종을 위해 농민에 의한 보호품종의 증식물질 이용 특허청구에 의해 결정	특허소유자의 추인을 필요	일반적으로 권리소유자의 추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품종 명칭	불필요	필요
보호 기간	30년	나무나 덩쿨류 25년 기타 종 20년

6. 어떠한 경우에 식물 품종 보호를 도입해야 하는가?

(1) 식물 육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독자적 기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기초로 한 유인제도가 육종 건수를 늘리고 육종 효과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는 국가들은 식물품종보호제도에 흥미를 가질 것이다. UPOV 회원국 중에는 식물 육종이 정부기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고 개인이나 사기업 또는 개인과 정부의 혼합된 형태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2) 각 UPOV 회원국은 UPOV 협약의 원칙에 입각한 유인제도가 국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식물육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 식물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식물육종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나라가 특히 필요로 하는 품종을 개발하도록 다른 나라 육종가들을 부추기며, 외국 육종가나 종자생산자가 재수출을 목적으로 보호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보장된 조건을 제공토록 하며, 그들 나라의 종자 거래를 서어비스적 역할에서 산업이 주축이 된 연구나 개발로 방향전환을 하는 등 관련 국가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정책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7. 식물 육종가의 권리 보호가 식물 유전자원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1) UPOV 협약의 제5조 3항은 보호된 품종이 후속적인 품종을 육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이 조항은 보호된 품종이 식물유전자원으로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UPOV 회원국들의 경험에 의하면 식물품종보호는 육종가의 숫

자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유전자원의 변이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품종의 선택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새로운 품종이 농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다는 사실은 농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품종이나 토종 품종을 재배하지 않고 그 대신 식물 육종가의 권리가 보호된 품종이건 아니건 새로운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품종이나 토종을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품종이 농민들에게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1989년 11월에 개최된 제 25차 총회에서 식물유전자원의 보증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즉, FAO는 식물육종가의 권리와 식물유전자원의 보증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식물 품종 보호가 국가 수준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1) 대부분의 UPOV 회원국에서는 신품종 보호를 위해 그 업무를 담당할 공신력있는 국가대리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에 신청토록 하고 있다.

(2) 믿을만한 품종 증식물질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새로이 개발된 품종의 유용성이 실현될 수 있다.

(3) 실제적으로 식물육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고품질의 식물종자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많은 국가들은 품종이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사되는 경우에만 주요 작물의 신품종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4) 현행 UPOV 회원국들은 품종검사와 종자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기관이 식물품종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많은 경우 품종보호를 위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 기술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이미 어떤 품종을 공식 품종목록에 등록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삼고 있다.

(5) 신품종보호는 종자의 품질관리나 장려품종목록을 확립하기위한 국가농업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UPOV 협약은 신품종보호제도가 종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과는 독립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 식품품종보호가 지적소유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다른 형태의 지적소유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식물품종보호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허청이 품종보호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품종의 기술적 검사는 농무성의 기술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식물품종보호제도가 특허나 상표 업무을 담당하는 상무성의 독립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관습적으로 무성생식에 의해 재생산된 품종의 보호는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유성생식에 의해 재생산된 품종의 보호는 농무성의 식품품종보호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9. UPOV 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1) UPOV 협약은 회원국간 연맹을 설립하여 각 연맹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도 자국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처럼 똑같이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식물품종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회원국들의 경험을 향유하고 범세계적인 식물육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UPOV 회원국이 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회원국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10. UPOV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1) UPOV의 기본적 활동은 주로 회원국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있다.

(2) 회원국간에는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품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회원국들은 보호될 품종의 품질을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그러한 협력체계는 회원국이 식물육종에 대한 투자 수준을 결정하거나 한 회원국으로 부터 다른 회원국으로 가치있는 품종을 이전시키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 협약에서는 연맹에 가입하는려 국가는 다른 회원국의 국내법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 나라에 품종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화야말로 식물육종가에게 분명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회원국간에 행정적 기술적 수준에서 상호 활발한 협력을 용이하게 해준다. 품종보호제도를 가능한한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연맹의 권고와 합치된 방식과 형태를 기초로 계속해서 그러한 협력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4) 그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UPOV는 이사회의 후원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가) 자문위원회

(나) 행정 및 법률위원회

(다)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반을 구성하고 있다.

(i) 농작물 기술작업반

(ii) 채소 기술작업반

(iii) 과일 기술작업반

(iv) 장식 식물 및 산림목 기술작업반

(v) 자동화 및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작업반

11. 식물 육종가가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가?

(1) 협약 5조에 의하면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육종가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권한도 그가 밝힌 조건에 따른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 육종가는 그의 배타적 권리를 품종의 증식물질이나 재생산물질을 그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데 사용하든가, 아니면 특허사용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허가권을 주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개별 국가에 따라 관례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종자를 생산, 판매해야 하고 종자 보관 방법의 난이도가 농민이 지불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종의 경우 식물 육종가는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생산 및 분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들면, 소립 곡물류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농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자재를 공급하는 지역협동조합이나 곡물상에게 허가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기관들은 계약에 따라 지방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 농민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육종가는 판매되는 종자의 양에 따라 특허사용료를 취득함으로써 만족하게 된다. 타가수정을 필요로 하는 품종이나 하이브리드 품종, 고품질의 채소품종 등과 같이 보다 전문화된 품종을 생산하는 경우 육종가는 그가 개발한 품종의 품질이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자 생산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육종가는 종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대가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종자의 상업적 분배구조나 특별한 품종의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兵站的 측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12. 어떻게 UPOV의 회원국이 되는가?

(1) 우선, 가입하려는 국가는 UPOV의 협약이 정해진 규칙과 합치되는 식물품종보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실시할 단계에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국가는 UPOV 협정에 동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국의 법률이 UPOV 협약의 조례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이사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만일 이사회의 자문 결과 그 나라의 법률이 UPOV 협정과 합치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해당 국가는 법률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협약 조례에 대한 동의서를 UPOV에 제출하고 재정 참여에 대한 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그 후 한달이 지난 후 UPOV의 회원이 된다.

(2) 1961년 이후의 회원국가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4개국이 UPOV의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1990년 중반까지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자국내에 협정과 일치된 식물신품종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30개 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상황을 자세하고도 사려깊게 고려하여 식물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들 국가들이 식물육종가에 대한 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들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전체 식물육종건수를 증가시켜 식물육종으로 인한 잠재력으로 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체적으로 식물육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호 독립적인 계획 내에서 수행될 그와같은 육종사업은 다양한 육종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3) UPOV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1978 조례」를 여러 회원국가들에게 맡기게 된 것이다.

13. 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1991 조례」: 왜 개정이 필요 했는가?

(1) 왜 그와같은 훌륭한 협약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새로운 「1991 조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 첫째, 「1978 조례」하에서는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중 어떤 나라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품종이 있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種이 그 나라에서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 조례」에서는 모든 屬·種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이 점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둘째, 「1978 조례」하에서는 육종가에게 그가 개발한 품종의 재생산 물질의 유통이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그와같은 물질의 생산만을 통제할 권한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육종가의 권리를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또한 「1978 조례」는 농민이 그들 농장에 파종을 목적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품종보호의 대상이 되는 과수를 구입하여 증식시킨 후 육종가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넓은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었으므로 농민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였다. 현대적 조직배양기술은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을 이처럼 남용할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1991 조례」는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의 생산뿐만 아니라 재생산에 대해서도 권리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례는 회원국에게 자유재량에 따라 농민이 보유코자하는 종자를 농장에 보관할 수 있는 전통적 행위에 대해서는 육종가의 권리를 적용치 않고 있다.

(4) 셋째, 「1978 조례」하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지 않는 어떤

국가가 그 품종을 취하여 절화 등과 같은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품종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 역수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육종가의 품종이 이용되더라도 육종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1991 조례」는 육종가의 권리보호를 보다 확대하여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육종가가 자신이 개발한 품종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확된 물질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도록 규정한다.

(5) 넷째, 「1978 조례」하에서는 보호를 받는 품종으로 부터 변형된 품종이 원래의 품종과 분명히 구별될 경우 보호를 받는 품종은 재선발, 돌연변이, 유전자의 추가 등과 같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변형이 가능하였으며 그와같이 변형된 품종은 육종가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별도로 보호되었다. 「1991 조례」하에서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변형된 基本的 由來品種은 여전히 보호를 받으나 그것이 유래된 원래의 보호받는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용될 수 없다. 이제는 보호받는 품종으로 부터 유래된 품종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다시 품종을 만들 때 만이 기본적 유래품종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규정은 寄生的 육종방법을 택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6) 1991 규정중에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변화도 있으나 본문에서 언급한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7) 「1991 조례」에서의 변화는 매우 합리적이며 육종가에게 21세기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형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991 조례」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하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와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익을 공정한 입장에서 균형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부

세계 식물 품종 보호의 개관

빈 면

제 2 부

세계 식물 품종 보호의 개관

1.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발전 과정

(1) 식물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UPOV 협약)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외교협약이 마무리 되던 1961년 12월 2일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태리, 네델란드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후 덴마크는 1962년 11월 26일, 스위스는 1962년 11월 30일, 영국은 1962년 11월 26일 각각 동 협약에 추가로 서명하였다.

(2) UPOV 협약은 1968년 8월 10일 독일이 비준함으소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영국과 네델란드는 이미 1965년과 1967년에 각각 동 협약에 비준하였다. (표 2-1)은 UPOV 회원국의 진전 상황을 연대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 연도별 UPOV 발전과정을 회원국수, 보호권리수 및 회원국에서 발효된 보호권리수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표 2-1 UPOV 발전의 연대기표

날 짜	내 용
1957~61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외교 협약
1961. 12. 2	UPOV 협약의 서명
1965. 9. 17	영국 비준
1967. 8. 8	네델란드 비준
1968. 7. 11	서독 비준
1968. 8. 10	UPOV 협약의 발효
1968. 9. 6	덴마크 비준
1968. 11	제1차 UPOV 이사회 개최
1971. 9. 3	프랑스 비준
1971. 11. 17	스웨덴 가입
1972. 11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1976. 11. 5	벨기에 비준
1977. 6. 1	이태리 비준
1977. 6. 10	스위스 비준
1977. 10. 7	남아연방 가입
1978. 10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을 위한 제네바 외교회의
1979. 11. 12	이스라엘 1961/72 조례 가입
1980. 4. 18	스페인 1961/72 조례 가입
1980. 11. 3	뉴질랜드 1978 조례 비준
1980. 11. 12	미국 1978 조례 수락
1981. 5. 19	이스라엘 1978 조례 비준
1981. 11. 8	UPOV 협약의 1978 조례 발효
1982. 8. 3	일본 비준
1983. 3. 16	헝가리 가입
1989. 2. 1	호주 가입
1989. 11. 11	폴란드 가입
1991. 2. 4	카나다 비준
1991. 3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1991. 11. 4	체코슬로바키아 가입
1993. 1. 12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의 UPOV 협약 계속 신청 선언
1993. 3. 16	핀란드 가입
1993. 8. 13	노르웨이 가입

그림 2-1 식물 신품종 보호의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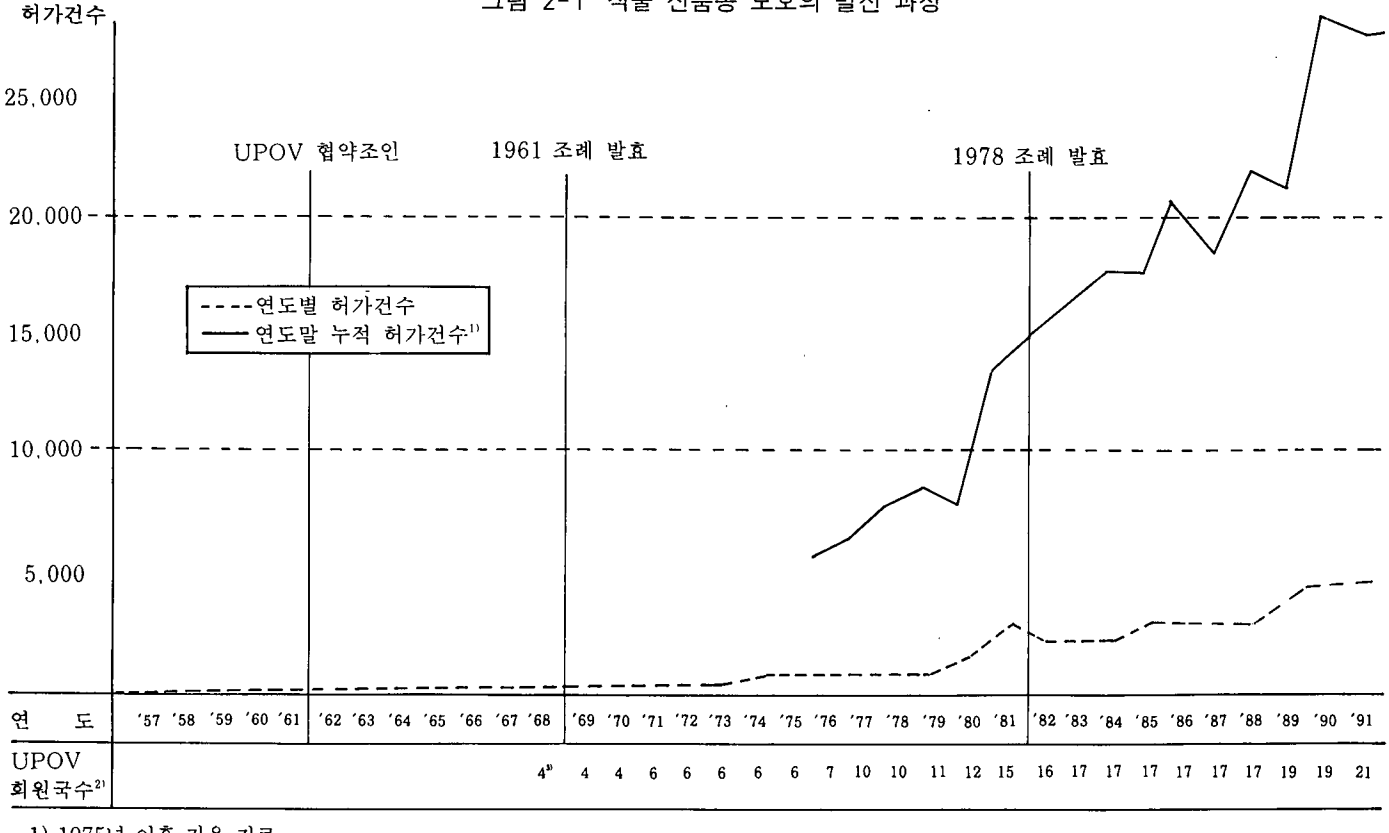

1) 1975년 이후 가용 자료.
2) UPOV 협약의 발효이전부터 통계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1949년부터), 덴마크, 독일, 네델란드(1964년부터) 및 영국(1966년부터) 임.
3) UPOV 협약이 발효된 국가임.

그림 2-2 UPOV 회원국의 지리적 분포

▦ 1993. 8. 3 현재 UPOV 회원국
▒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

(4) 현재 UPOV는 다음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남아연방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아 시 아: 이스라엘, 일본

유　　럽: 벨기에,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대 양 주: 호주, 뉴질랜드

(5) 1991년 회원국에 접수된 보호신청건수와 허가된 보호권리건수는 (표 2-2)에 나타나 있다.

(6) 국내품종/외국품종 비율은 국가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국가들에 있어서는 보호가 허락된 외국품종의 비율이 매우 높다(그림 2-3).

2. 보호되는 품종

(1) UPOV 협약은 모든 식물 계통에 대해 적용된다. UPOV 협약의

표 2-2 UPOV 회원국별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및 품종 등록 현황; 1991

회 원 국	보호 형태*	신 청 수	허 가 수	폐 지 수	연 도 말 등 록 수
호 주	PVP	111	61	-	149
벨 기 에	PVP	126	108	63	412
캐 나 다	PVP	-	-	-	-
스 위 스	PVP	91	58	39	404
체코공화국	PVP	63	-	-	-
독 일	PVP	1,118	576	507	4,077
덴 마 크	PVP	242	250	92	1,176
스 페 인	PVP	354	-	10	644
프 랑 스	PVP	876	570	405	3,684
영 국	PVP	446	359	289	1,829
헝 가 리	특허권	110	49	12	144
아 일 랜 드	PVP	26	21	25	104
이 스 라 엘	PVP	153	82	38	624
이 태 리	특허권	300	325	-	-
일 본	PVP	722	418	170	2,343
네 델 란 드	PVP	1,431	855	697	3,832
뉴 질 랜 드	PVP	71	91	32	462
폴 란 드	PVP	248	69	1	141
스 웨 덴	PVP	108	53	56	327
미 국	PVP	271	215	133	2,418
	특허권	463	353	157	4,175
남 아 연 방	PVP	71	67	25	544
총 계		7,401	4580	2,751	27,481

* PVP는 식물품종보호법을 의미함.

그림 2-3 UPOV 회원국의 식물 품종 보호 현황,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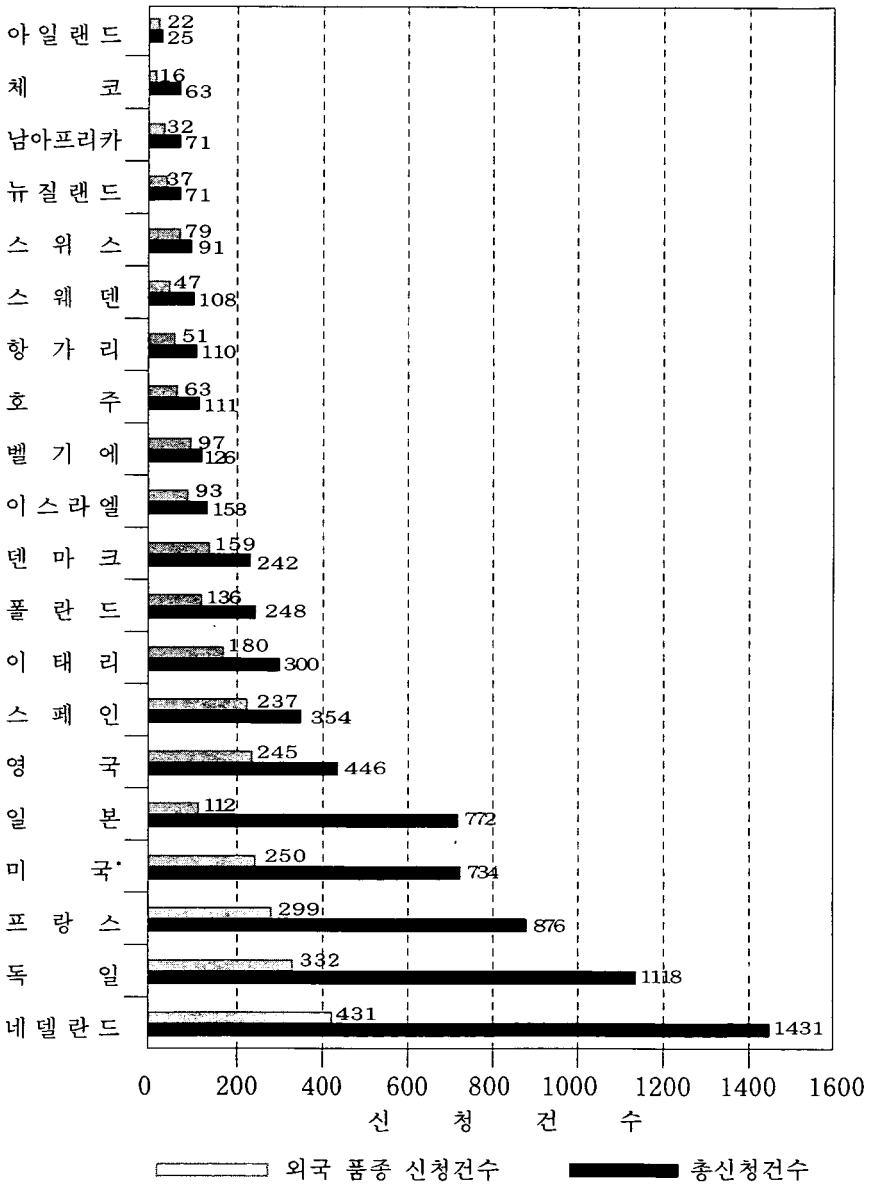

* 식물품종보호법과 특허권에 의한 총신청건수임.

「1978 조례」는 연맹회원국이 가능한 최대 숫자의 식물 속·종에 대해 협약규정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 협약은 다음과 같은 시간계획과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속·종수를 제시하고 있다.

(i) 영토내에 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속 또는 종

(ii) 3년내에 적어도 10개의 속이나 종

(iii) 6년내에 적어도 18개의 속이나 종

(iv) 8년내에 적어도 24개의 속이나 종

(2) 현재의 UPOV 회원국종 호주, 독일, 헝가리, 네델란드, 뉴질랜드 및 미국은 모든 식물계통을 보호하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은 현재 분류체계(目, 科, 屬, 種, 亞種)에 따라 정의된 특별한 식물 범주만을 식물품종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이 되는 품종은 식물분류목록의 형태로 발간된다. 보통 각국에서는 그러한 목록을 확장할 때 해당 종의 중요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한다. 프랑스, 일본, 네델란드 등지에서는 식용버섯도 보호대상이 되며 일본에서는 김을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3) 협약의 「1991 조례」 규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동 협약의 조례가 발효된 후 늦어도 5년 이내에 모든 식물의 속.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호를 확대하여야 한다. 「1991 조례」에만 구속되는 신규 회원국들은 동 조례에 의해 구속되는 시점에 적어도 15개의 식물 속.종에 대해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늦어도 10년 이내에 모든 식물의 속.종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4) (표 2-3)은 현재의 UPOV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물 품종 보호체계의 적용범위를 보호되는 식물 계통별 숫자로 나타내고 있다. UPOV는 회원국별로 보호하고 있는 식물 계통의 전체 목록을 매년 발행하여 관련 기관에 보내고 있다.

(5) (표 2-4)는 6개의 회원국에서 가장 많이 보호하고 있는 식물종과

보호 권리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3 회원국별 보호대상 식물의 수

회원국	綱 (Division)	目 (Order)	科 (Family)	屬 (Genus)	種 (Species)	亞種 (Sub-species)
호 주	모든 식물종(곰팡이, 조류 및 박테리아 제외)					
벨 기 에			1	115	99	20
캐 나 다				2	6	
스 위 스	1		141			
체코공화국				19	84	18
독 일	모든 식물종					
덴 마 크				40	90	18
스 페 인				2	32	
프 랑 스			1	34	69	1
영 국		1	1	255	159	14
헝 가 리	모든 식물종					
아일랜드				6	21	4
이스라엘				52	64	2
이 태 리				43	35	1
일 본				233	188	9
네델란드	모든 식물종					
노르웨이				24	20	10
뉴질랜드	모든 식물종					
폴 란 드				26	174	31
스 웨 덴				30	60	13
슬로바키아				19	84	18
미 국	모든 식물종					
남아프리카				32	64	10

표 2-4 국별 주요 보호종 및 등록 품종 수

프 랑 스	독 일	일 본	네델란드	영 국	미 국*
옥수수	장미	장미	국화	장미	대두
(720)	(470)	(214)	(362)	(442)	(487)
국화	옥수수	벼	장미	국화	밀
(502)	(342)	(151)	(342)	(261)	(217)
장미	국화	카네이션	백합	완두	완두
(387)	(316)	(143)	(301)	(117)	(194)
해바라기	감자	국화	카네이션	감자	목화
(186)	(195)	(123)	(301)	(109)	(175)
페라고늄	라이그라스	심비디움	라이그라스	보리	강남콩
(184)	(160)	(116)	(177)	(98)	(162)
연질 소맥	페라고늄	백합	거베라	페라고늄	동부
(145)	(155)	(67)	(155)	(102)	(149)
감자	보리	스톡類	감자	라이그라스	상치
(133)	(137)	(66)	(262)	(81)	(85)
보리	사탕무우	표고버섯	프리지아	밀	알팔파
(132)	(130)	(62)	(118)	(64)	(71)
강남콩	카네이션	복숭아	알스터메리아	유채	라이그라스
(122)	(105)	(49)	(114)	(48)	(68)
카네이션	레드페스큐	감귤	제라늄	알스터메리아	상치
(121)	(103)	(43)	(101)	(41)	(50)

* 식물품종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품종만을 포함.

3. 보호의 형태

(1) UPOV 협약의 「1978 조례」 2조 1항은 다음과 같다:
"각 연맹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육종가의 권리를 특별 보호권리나 특허권중 어느 것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회원국의 국내법이 두가지 형태의 보호를 모두 허용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식물 속·종에 대해 二重 형태의 보호를 택해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첫 문

장은 각 회원국이 보호의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회원국은 식물품종보호권을 특허권으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식물 품종 보호 증명"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같이 특별 보호권의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 두번째 문장은 상이한 보호 조건이나 상이한 보호의 범위를 가진 품종의 보호를 위해 서로 다른 형태의 보호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른바 "이중 보호의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2) 현재 24개 UPOV 회원국의 대부분은 특별한 보호권의 형태로 식물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태리와 헝가리 두나라는 특허법에 의해 식물 품종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태리와 헝가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식물품종에 대한 육종가의 권리 인정 내용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특별보호권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이태리와 헝가리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형태의 권리보호는 "특허권"이라고 불리나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동일하다.

(3) 많은 나라들이 운용하고 있는 국가특허법이나 「유럽特許協約」 또는 「카타지나 協約」 등과 같은 지역협약 하에서는 동식물 품종이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다음과 같은 나라에서는 식물 품종에 대한 특허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알제리아,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바도스,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카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큐바,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북한, 덴마크, 에쿠아돌, 유럽특허협약, 핀랜드, 프랑스, 감비아, 독일, 가나, 그리스, 아이스랜드, 인도네시아[1] , 이스라엘, 케냐, 레소토, 룩셈브룩, 마다가스칼, 말레이시아, 네델란드,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Office Africai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2], 폐루,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무성생식으

---

1) 자양식물은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음.

2) 베닌, 버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챠드, 콩고, Cote d'Ivoire, 가봉, 기나아, 말리, 모리타니아, 나이젤, 세네갈, 토고.

로 재생산된 식물 품종 제외),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우간다, 영국, 탄자니아 연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

(4) 미국은 보호의 형태에 있어서 현재의 UPOV 회원국중 특수한 위치에 있다. 미국은 이미 1930년에 식물특허법을 제정하여 괴경식물을 제외한 무성생식으로 번식되는 품종을 보호하였다. 비록 이것이 식물특허라고 불리기는 하였으나 거의 모든 관점에서 UPOV 협약과 비견되는 독특한 권리보호제도이다. 유사한 식물특허가 1937년 큐바에 도입되었고, 1952년에는 남아프리카에[3], 1979년에는 한국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식물 특허는 실제로 미국에서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1970년에 식물품종보호법이 미국에 도입된 이후에서야 유성생식에 의해 번식되는 식물을 육종하는 육종가가 보호받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이 공존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UPOV 협약의 1961 조례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1961 조례의 제2조 1항에 의하면 하나의 동일한 속이나 종에 속하는 품종들은 단지 한가지 형태의 보호만을 받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물중에는 유성생식이나 무성생식 어느 쪽으로나 번식이 가능한 속.종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일한 종의 품종에 대하여 식물특허권과 식물품종보호증명 양자에 의해 보호를 해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은 그후 1978년 UPOV 협약이 개정된 후에야 회원국이 되었다. 「1978 조례」는 두가지 형태의 보호제도를 모두 인정하는 예외규정(제37조)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1년에 UPOV 협약에 가입하였다. 제37조는 오로지 미국만이 이 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1985년 9월 18일 특허 上告및 충돌위원회의 결정(히버드 소송) 이후 미국에서는 새로운 식물품종에 대해서도 산업

---

3) 남아프리카는 그 후 1976년에 식물 육종가의 권리를 도입하였음.

특허(또는 실용신안)를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는 세가지 형태로 새로운 식물품종을 보호할 수 있다.

4. 국가 수준에서의 UPOV 협약의 이행

(1) 각 나라에서 식물품종보호의 관할권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표 2-5).

(i)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후 신청서 출원

표 2-5 식물품종보호국의 업무

식물품종 보호를 위한 절차	식물품종보호국의 업무
1. 보호의 신청	- 신청수수료와 함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발간
2. 후보품종의 검사	- 검사의 수행 또는 주선 - DUS 기준에 맞는지 판단
3. 보호권의 인정	- 품종등록 및 보호권 발행 - 등록 품종 간행
4. 유지 및 감독	- 연유지비 접수 - 필수면허 인정 - 보호권 취소 - 필요한 경우 품종 유지를 감독
5. 항소	- 항소 심리

(ii) 5가지 기준(상업적 독창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적절한 품종명)에서 신청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거나 타 기관에서 검토하도록 주선

(iii) 신청서가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반려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등록 결정

(iv) 年手數料 징수 등을 포함하여 발행한 권리를 관리하고 만일 보호를 받고 있는 품종이 보호자격을 상실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무효화

(v) 어떤 나라의 경우 요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보호를 인정할 만한 조건이 만족되면 필수적으로 면허를 인정

(vi) 신청서의 출원, 품종 설명이 첨부된 권리인정, 권리의 취소 또는 무효화, 필수면허인정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품종보호에 대한 정보를 발간

(2) 식물품종보호의 두가지 주요한 목적은 육종가의 지적소유권 보호와 농업생산의 증대라는 두가지 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식물품종보호가 지적소유권 보호를 책임맡고 있는 기관이나 농업을 책임맡고 있는 기관의 어느쪽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후자의 경우 가장 적절한 정부 기구는 종자 및 품종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림 2-4)에서 보여주듯이 식물품종보호 업무는 특허청과 같이 지적소유권을 담당하는 사무실이나(대안 I), 농무성내 종자 및 품종관리 기관(대안 II)에 통합될 수 있다.

(3) 현재의 UPOV 회원국가에서는 식물품종보호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i) 대안 I : 상무성의 특허국

이태리나 헝가리에서는 식물품종이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다. 새로운 식물품종의 보호는 특허국이 관할기관이다. 이태리에서는 l'Ufficio Centrale di Brevetti라는 특허국에서 모든 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농무성은 품종심사를 수행한다. 헝가리에서는 노동국에서 비

슷한 업무를 맡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새로운 식물품종을 식물품종권리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식물품종권리국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래 식물품종권리국은 농무성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모든 지적소유권을 관장하고 있는 상무성 소속으로 되어 있다.

(ii) 대안 II : 농무성

대부분의 UPOV 회원국들은 식물신품종보호를 농무성에서 직접 관장하든가(카나다, 일본, 스위스) 농무성의 특별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상용화되는 품종에 대해 국가품종목록을 확립하기 위한 기술적 업무가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업무와 크게 중복되고 많은 경우 그러한 업무가 동일한 기관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2-4 식물 품종 보호와 정부의 관련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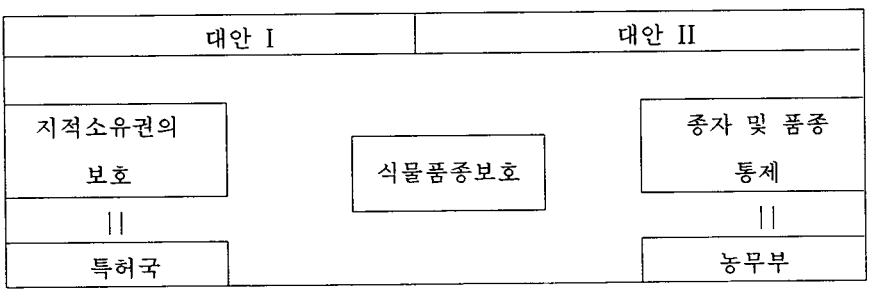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 연구기관과 개인 육종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할기관을 정부로 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iii) 대안 II의 변형: 독립된 기관

독일에서는 새로운 품종이 독립된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Bundessortenamt라는 연방식물품종국은 독립된 연방 기관으로서 연방농무부의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영국의 식물품종권리국은 정부에 의해 지정된 식물품종권 통제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독일의 연방식물품종국은 모든 필요한 품종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숫자

의 부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식물품종권리국은 자체적으로 품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러한 업무를 다른 독립된 기관에 위촉을 하고 있다.

(4) 미국에서는 유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식물의 종을 다루는 식물품종보호법이 농무성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물품종보호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무성생식에 의해 번식되는 품종을 다루는 식물특허권과 실용특허(또는 산업특허)는 상무성에 있는 특허 및 상표국에 의해 운영된다.

(5) UPOV 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관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식물 품종 보호기관 형태별 실시 국가

기 관 형 태	실 시 국 가
농무성(16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남아르리카, 스페인, 스웨덴, 미국[1]
특허국(3개국)	헝가리[2], 이태리[3], 미국[2]
독립된 기관(2개국)	독일, 영국
기타(2개국)	체코공화국[4], 뉴질랜드

1) 식물품종보호법은 농무성내의 식물품종보호국의 의해 운용됨. 식물특허법은 상무성내의 특허 및 상표국에 의해 운용됨.

2) 검사는 농무부에 의해 수행됨.

3) 경제부의 농업 및 식량국.

4) 식물품종권리국은 현재 상무부 산하에 있음.

빈 면

제 3 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991. 3. 19 개정판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제네바,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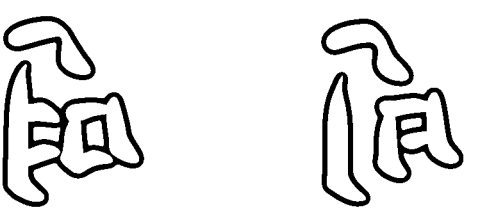

빈 면

제 3 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1장 정 의

제1조: 정의

이 법의 목적은:

(i) 「협약」이라 함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1991년 국제협약」을 일컫는다.

(ii) 「1961/1972년 법안」이라 함은 1961년 12월 2일에 마련된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1972년 11월 10일 마련된 개정 법안을 말한다.

(iii) 「1978년 법안」이라 함은 1978년 10월 23일에 개정된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iv) 「육종가」란

- 품종을 육종, 발견, 또는 개발한 사람
- 앞에서 말한 육종가를 고용한 사람 또는 법적으로 그 업무를 위임받아 후속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

- 또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직을 승계한 사람을 일컫는다.

(v) 「육종가의 권리」란 이 협약에서 주어지는 육종가의 권리를 의미한다.

(vi) 「품종」이란 육종가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는 관계없이 식물분류상 최하위에 속하는 식물의 一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품종」은

- 주어진 유전자형 또는 여러가지 유전자형의 조합으로 부터 발현되는 특성에 의해 특정되어야 한다.
- 앞에서 언급한 특성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식물분류학상 같은 분류에 속하는 다른 식물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증식시킬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진 개체로서 인식된다.

(vii) 「계약당사자」란 이 협약에 가입한 정부 또는 정부간 조직을 말한다.

(viii) 계약당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영토」란 계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그 국가의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며, 계약당사자가 정부간 조직인 경우 그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영역을 말한다.

(ix) 「권한」이란 제30조 1항 (ii)에서 언급된 권한을 의미한다.

(x) 「연맹」이란 1961년에 마련된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연맹과 그 이후 1972년 및 1978년에 개정된 법안을 마련한 연맹을 통칭한다.

(xi) 「연맹 회원」이란 1961/1972 또는 1978년 법안을 마련한 연맹의 국가 또는 계약자를 말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제2조: 계약당사자의 기본적 의무

각 계약당사자는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보호되는 속.종

(1) 연맹의 기존 회원국가

1961/1972년 또는 1978년 법안 마련에 참여한 각 계약당사자들은

(i) 이 협약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식물의 속·종, 또는 1961/1972 및 1978년 법안에서 규정된 식물의 속·종에 대해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ii) 위에서 지정한 시점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모든 식물의 속·종에 대해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연맹의 신회원

1961/1972년 또는 1978년 법안에 구속받지 않는 각 계약당사자는

(i) 이 협약에 의해 구속되는 시점부터 적어도 15개 속·종에 대해

(ii) 위의 시점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모든 식물의 속·종에 대해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제조약

(1) 조약

계약당사국, 자연인, 그리고 계약당사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법적 개체들은 육종가의 권리 인정이 나 보호에 관한 한 다른 계약당사국에 부과된 조건이나 형식절차를 따르는 한 다른 계

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도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만일 쌍방 국가의 법이 상호 일치하지 못하여 동일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앞으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치시켜야 한다.

(2) 국가

앞의 문장에서 「당사국」이란 계약당사자가 정부인 경우에는 바로 그 정부가 속한 국가, 계약당사자가 정부간 조직인 경우 그 조직의 구성원인 정부가 속한 국가들임을 의미한다.

제3장 육종가의 권리 양도조건

제5조: 보호조건

(1) 만족되어야 할 기준

육종가가 개발한 식물의 종이

(i) 새롭고

(ii) 다른 종과 구별되고

(iii) 균일하고

(iv) 안정되었을 때 육종가의 권리는 인정된다.

(2) 기타 조건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이 제20조 규정에 따라 품종명이 명명되고 신청자가 계약 당사자의 법률에 규정된 형식절차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고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육종가의 권리는 인정된다. 이외 추가적인 조건이나 이와는 상이한 다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6조: 신규성

(1) 기준

육종가의 권리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증식되거나 수확된 식물의 품종이 육종가의 동의에 따라

(i) 계약 당사자의 영토내에서는 육종가의 권리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일년 이내에

(ii) 계약 당사자의 영토 밖에서는 4년 이내(나무나 덩쿨 식물의 경우 6년 이내)에 그 종을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한 적이 없는 경우 그 품종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2) 최근 개발된 품종

계약당사자가 지금까지 어떤 식물의 속이나 종을 대상으로 이번 협정 내용이나 또는 이전 협정을 적용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협정을 적용했을 경우 그 식물의 속이나 종은 육종가의 권리를 신청한 시점 이전 이미 개발된 것으로 간주하여 설령 그 식물이 제6조 1항에 규정된 시간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거나 처분되었더라도 새로운 식물로 간주하여 보호할 수 있다.

(3) 특수한 경우

제6조 1항에서 모든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동일한 정부간 조직의 회원국으로서 그 조직의 규정이 공동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회원국간의 영토내에서 법률이 일치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제7조: 구별성

어떤 새로운 품종을 신청할 당시 그 특성이 널리 알려진 다른 품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때 그 품종은 다른 품종과는 구별된다. 특히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기존 품종에 등록 신청하여 육종가의 권리가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품종 등록이 될 경우 신청일 이후 다른 품종으로 일반화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균일성

식물체의 번식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변이와 관련하여 증식된 식물체가 관련된 특성에 있어 충분히 균일하다면 그 품종은 균질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안정성

어떤 품종을 반복적으로 증식시킨 후 또는 특별한 증식 단계에서 후계세대에서도 번식된 식물체가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품종은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육종가의 권리 허가신청

제10조: 신청 접수

(1) 신규 신청 장소

육종가는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규 허가신청을 할 때 계약당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

(2) 추가신청 시기

육종가는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규로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에게 허가를 신청했더라도 곧바로 다른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호의 독립성

계약당사자는 신청하려는 품종에 대한 보호를 아직 신청한 적이 없고 또 그것이 다른 국가 또는 정부간 조직에서 거절되거나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권리인정 기간을 제한 할 수 없다.

제11조: 우선권

(1) 권리와 그 기간

품종보호를 위해 어느 계약당사자에게 처음으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 육종가가 육종가의 권리인정을 목적으로 동일한 품종에 대해 다른 이해 당사자의 대리인과 추가계약할 경우 12개월 동안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이 기간은 맨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계산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권리요구

우선권 혜택을 받기 위해 육종가는 추가계약 신청시 최초 신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계약 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육종가에게 추가계약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 일정기간내에 최초 신청 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복사본 제출시 그 문서가 최초 신청시 제출된 문서와 동일한지 해당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신청서를 양쪽에 모두 제출할 때 대상이 되는 품종이 동일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샘플이나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3) 문서와 재료

육종가는 최초 신청이 거절되거나 취소된 곳에서 2년이 경과한 후 추가신청을 제출한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제12조 규정에 의해 재검토에 필요한 정보나 문서 또는 물질을 제출해야 한다.

(4) 추가신청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

제11조 1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최초 신청 대상이 되는 품종을 다시 신청하거나 발표 또는 이를 이용하려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추가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제3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계기도 되지 못한다.

제12조: 신청 검토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어떤 결정도 제5조부터 9조에 이르는 제규정과 합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대리인이 신청

코자하는 품종을 재배하거나 다른 필요한 검사를 직접 행할 수 도 있으며 이를 다른 기관에 위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행해진 결과를 이용할 수 도 있다. 검토를 위해 대리인은 육종가에게 필요한 정보와 문서, 재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잠정적 보호

각 계약당사자는 육종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청서의 제출과 이의 공표 사이의 기간 동안 육종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와같은 수단으로 육종가의 권리 보유자가 그 기간동안에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단 육종가의 권리가 인정되었을 때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다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당사자는 위에서 언급한 수단이 육종가의 선청서 제출을 통고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육종가의 권리

제14조: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범위

(1) 증식 물질에 관한 법률

(a) 제15조 및 16조에 관하여 보호될 품종의 증식 물질에 대한 다음 법률은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 생산 및 재생산
- 증식 목적에 대한 조건
- 판매 또는 기타 유통
- 수출
- 수입
-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한 재고

(b) 육종가는 조건과 그 한계를 설정하여 추인을 할 수 있다.

(2) 수락된 물질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16조에 관하여 수확된 물질이 식물 전체이든 식물체의 일부분이든 보호될 품종은 육종가의 추인없이 증식 물질로 부터 구하였을 경우 육종가가 위에서 언급한 증식 물질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적당한 기회가 없었다면 제14조 1항(a)에서 규정한 7가지 법률은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3) 특정 생산물에 대한 법률

제15조 및 16조에 대해 육종가가 위에서 언급한 수확 물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적절한 기회가 없었을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육종가의 승인없이 보호될 품종으로부터 수확된 물질로 부터 직접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해 제14조 1항(a)에서 언급된 법률은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4) 가능한 추가 법률

제15조 및 16조에 대해 각 계약당사자는 제14조 1항(a)에 언급된 규정 이외의 규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5) 기본적 유래 품종으로 부터 유래되거나 변형된 품종

(a) 제14조(1)~(4)항 규정은 다음과 관련하여서도 적용한다.

(i) 보호된 품종으로 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단, 보호된 품종 그 자체는 유래된 품종이 아님.

(ii) 제7조에 따라 보호된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품종

(iii) 생산에 있어서 보호된 품종의 반복적 사용을 필요로 하는 품종

(b) 제14조 1항(a)(i)의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는 다른 품종(原品種)으로 부터 유래된 품종으로 간주한다.

(i) 그 품종이 최초 품종으로 부터 유래되었거나 원품종으로

부터 유래된 품종으로 부터 다시 유래된 품종으로서 원품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품종

(ii) 원품종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품종

(iii) 유래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르지만 원품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나 유전자형의 결합으로 부터 나타난 결과가 기본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진 품종

(c)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돌연변이나 조직배양시 발생된 변이종, 원품종의 개체선발에 의해 얻어진 변이종, 여교잡에 의한 품종, 유전공학적 변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제15조: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예외

(1) 강제적 예외

육종가의 권리는 다음 경우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i) 개인적인 활동이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ii) 실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iii) 제14조 5항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품종의 육종을 위해 사용될 경우 또는 다른 품종과 관련하여 제14조(1)~(4)항에 언급된 행위

(2) 선택적 예외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큼 제한된 범위내에서 육종가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각 계약당사자는 농민들이 증식목적으로 그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종가가 보유한 품종이나 그 품종으로 부터 생산된 수확물, 보호된 품종 또는 제14조 5항 (a) (i) 및 (ii) 규정에 의한 품종에 대하여 육종가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육종가의 권리 소멸

(1) 권리의 소멸

육종가의 양해에 의해 계약당사자의 영토내에서 판매되거나 다른 형태로 유통된 보호된 품종, 제15조 5항에 규정된 품종이나 보호된 품종으로 부터 파생된 물질, 앞에서 언급한 물질로 부터 유래된 어떠한 물질에 대한 행위가 다음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한 육종가의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i) 관련된 품종의 추가적인 증식과 관련된 행위

(ii) 수출된 물질이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 품종에 속한 식물체의 유전자 또는 종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로 품종의 증식을 가능케 하는 물질을 수출하는 행위

(2) 「물질」의 의미

제16조 1항에 규정된 「물질」이란 품종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i) 어떤 종류의 증식 물질

(ii) 식물 전체나 식물체의 일부분을 포함한 수확된 물질

(iii) 수확된 물질로 부터 직접 만들어진 어떠한 생산물

(3) 특별한 경우의 「영토」

제16조 1항과 관련하여 하나의 동일한 정부간 조직에 속한 모든 회원국인 계약당사자들은 그 조직의 규칙이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들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 육종가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

(1) 공공 이익

이 협약에서 표현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모든 계약당사자는 공공 이익외의 다른 이유로 육종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2) 동등한 보상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마련한 계약당사

자의 규제가 제3자로 하여금 추인을 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관련된 계약당사자는 육종가가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통상 규제수단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영토내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품종과 관련된 물질의 생산, 등록, 유통 및 수출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 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육종가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제19조: 육종가의 권리 기간

(1) 보호 기간

육종가의 권리는 고정된 기간 동안 인정된다.

(2) 최소 기간

앞에서 말한 기간은 육종가의 권리가 인정되는 날짜로 부터 최소한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무나 덩쿨식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최소한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품종의 명명

제20조: 품종의 명명

(1) 품종의 호칭과 명명

(a) 품종은 당초 명명된 대로 호칭되어야 한다.

(b) 모든 계약당사자는 제20조 4항과 관련하여 육종가의 권리가 소멸된 후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등록된 품종명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

(2) 명명의 특성

명명을 할 경우 그 품종이 다른 것과 구별되도록 해야만 한다. 품종

을 숫자로 명명하는 것이 관행이 아닌 곳에서는 숫자만으로 명명을 할 수 없다. 품종명이 그 품종의 특성, 가치, 품종의 고유성, 육종가를 구별하는데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새로이 명명될 품종명은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영토내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동종 또는 근연의 종에 속한 품종명과 달라야 한다.

(3)품종명의 등록

육종가는 품종명을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품종명이 제20조 2항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리인은 육종가로 하여금 일정 기간내에 다른 이름을 제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품종명은 육종가의 권리가 인정됨과 동시에 대리인에 의해 등록된다.

(4) 제3자의 선취권

제3자의 선취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만일 선취권을 이유로 제20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어떤 품종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리인은 육종가에게 다른 이름을 제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모든 계약당사자에 대한 명명 통보

어느 한 품종은 모든 계약당사자에게 동일한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품종명이 그 권리를 신청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각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은 제출된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만일 품종명이 적합치 않다고 판명될 경우 육종가에게 다른 이름을 제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당사자의 대리인간 정보교류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은 해당 품종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모든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품종명의 제안, 등록, 종명의 취소시에도 이를 통보한다. 어느 대리인도 새로 등록하려는 품종명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품종을 등록하려는 대리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품종명 사용에 대한 의무사항

어느 한 계약당사자의 영토내에 있는 개인이라도 그 영토내에서 보호될 품종의 증식 물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그 품종에 대한 육종가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라 할지라도 등록된 품종명을 사용해야 한다. 단, 제2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취권에 의해 동일 품종명의 사용을 금지하는 곳에서는 예외로 한다.

(8) 품종명과 관련한 표시사항

어떤 품종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등록된 품종명과 함께 상표명이나 다른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만일 그와같은 표시를 할 경우라도 품종명은 반드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7장 육종가의 권리 무효와 취소

제21조: 육종가의 권리 무효

(1) 무효에 대한 사유

각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인정된 육종가의 권리가 무효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i) 제6조 및 7조에서 규정된 조건이 육종가의 권리 인정시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ii) 육종가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육종가가 제출한 정보나 문서에 의해 인정된 경우 제 8조 및 9조에 규정된 조건이 육종가의 권리 인정시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iii) 육종가의 권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인정되었을 경우

(2) 다른 사유의 불인정

제21조 1항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육종가의 권리가 무효로 선언될 수 없다.

제22조: 육종가의 권리 취소

(1) 취소의 사유

(a) 제8조 및 9조에 규정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할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이미 인정한 육종가의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b) 각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요청한 시점으로 부터 일정기간 내에 육종가의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i) 육종가가 그 품종의 유지를 증빙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나 문서, 물질을 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

(ii) 육종가가 그의 유효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지 않았을 경우

(iii) 육종가가 권리 인정후 품종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합한 이름을 제안하지 않았을 경우

(2) 다른 사유의 불인정

앞에서 언급한 제22조 1항의 규정외 다른 이유로 해서 육종가의 권리를 취소할 수 없다.

제8장 연 맹

제23조: 회 원

계약당사자는 본 연맹의 회원이 된다.

제24조: 법적 지위와 의결권

(1) 법인

연맹은 법인자격을 가진다.

(2) 법적 자격

연맹은 각 계약당사자의 영토내에서 규정된 법에 따라 연맹의 목적을 이행하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법적 자격을 누릴 수 있다.

(3) 소재

연맹과 그 상설기관은 제네바에 위치한다.

(4) 본부

연맹은 스위스와 본부설치 동의를 한다.

제25조: 기 구

연맹의 상설기구는 이사회와 연맹사무국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1) 구성

이사회는 연맹 회원의 대표로 구성한다. 각 연맹회원은 이사회에 한명의 대표와 한명의 교체자를 지정한다. 대표와 교체자는 보조자 또는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2) 임원

이사회는 회원중에서 한명의 회장과 한명의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며 다른 부회장들을 선출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으로 선임된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회기

이사회는 회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통상 회의는 매년 개최되며 회장은 자유재량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국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참관자

연맹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이사회에 참관자 자격으로 초빙될 수 있다.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른 참관자들도 이사회에 초빙될 수 있다.

(5)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i) 연맹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강구

(ii) 의사진행 절차의 규율 확립

(iii) 사무총장 지명과 필요한 경우 부총장을 지명하고 각각의 임기를 결정

(iv) 연맹의 연례 활동보고 검토 및 장래의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설정

(v) 사무총장에게 연맹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방향을 제시

(vi) 연맹의 행정 및 재정 규정을 확립

(vii) 연맹의 예산을 검토하고 인준하며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지정

(viii) 사무총장에 의해 제출된 회계보고를 검토하고 이를 인준

(ix) 제38조에 언급된 회의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회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마련

(x)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연맹의 효율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결정을 한다.

(6) 투표

(a) 연맹의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한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b) 어느 정부간 조직도 권한 내에서 회원 국가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간 조직은 그들 회원국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원국을 대신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다수결 원칙

모든 이사회의 결정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며 제26조 5항의 (ii), (vi), (vi), (vii) 및 제28조 3항, 제29조 5항

(b), 제38조 1항에 대해서는 투표자 3/4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권은 투표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연맹사무국

(1) 사무국의 임무와 감독

연맹사무국은 이사회에 의해 위임된 모든 직무와 과업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른다.

(2) 사무총장의 임무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사무총장은 연맹의 예산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조직관리, 연맹의 활동 및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3) 직원

제26조 5항 (iii)의 규정에 따라 연맹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의 채용이나 임명조건은 행정 및 재정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28조: 언 어

(1) 사무국의 언어

연맹사무국은 업무 수행시 영어, 불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2) 특정 회의시 사용되는 언어

이사회나 총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3) 추가적 언어

이사회는 4가지 언어 외 다른 언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할 수 있다.

제29조: 재 정

(1) 수입

연맹의 비용은 다음에 의해 충당된다.

(i) 연맹 회원국의 연 분담금

(ii)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iii) 기타 수입

(2) 분담금 단위

(a) 각 연맹 회원국의 연 분담몫은 연맹 회원국의 연 분담금에 의해 충당되어야 할 지출 총액과 제29조 3항 규정에 따른 분담금 단위를 기초로 결정된다. 분담몫은 제29조 4항에 따라 산정한다.

(b) 분담금 단위는 자연수 또는 분수로 표시되며 최소단위는 0.2이다.

(3) 각 회원국의 분담몫

(a) 이번 협약에 의해 구속되는 1961/72년 법안 또는 1978년 법안의 주체인 연맹 회원국들에게는 언급한 날짜의 직전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분담금 단위를 적용한다.

(b)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 회 현재 연맹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에게는 그들이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선언서에 표시한 만큼의 분담금 단위를 적용한다.

(c) 제29조 3항 (a)(b) 규정하에서 어느 연맹 회원국이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들이 사무총장에게 밝힌 것과 다른 분담금 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선언이 1-6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음해 초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6월 이후 선언하였다면 내후년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분담몫의 계산

(a) 각 회계연도 동안 한 단위의 분담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동 기간 동안에 연맹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총비

용을 연맹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총분담금 단위로 나누어 환산한다.

(b)각 연맹 회원국의 분담금은 분담금 1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분담금 단위를 곱하여 산정한다.

(5) 분담금의 지체

(a)연맹 회원국이 분담금을 1년치 이상 지체한 경우 제29조 5항 (b)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투표권을 유보한다고 해서 해당 회원국에게 본 협약의 제 의무조항을 경감시킬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다른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b)만일 이사회가 해당 회원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담금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그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회계감사

회원국은 행정 및 재정규칙에 따라 연맹의 회계감사를 한다. 이사회는 해당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그 회원국을 회계감사국으로 지정한다.

(7) 정부간 조직의 분담금

정부간 조직의 회원국으로 소속되어 있는 계약당사자는 분담금 지불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분담금 지불을 원할 경우 제29조 (1)~(4)항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9장 협약 이행과 기타 의결사항

제30조: 협약 이행

(1) 이행 수단

각 계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용하

여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 계약당사자는

(i) 육종가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ii) 대리인에게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업무를 위임하고 다른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에게도 그 업무을 위임할 것

(iii) 일반인들이 다음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정기발간물을 통해 이를 홍보할 것

- 육종가의 권리 인정을 위한 신청
- 제안되고 승인된 품종명

(2) 법률의 일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계승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 각 회원국이나 정부간 조직은 법적 장치에 의해 본 협약의 규정이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제31조: 계약당사자와 국가의 관계

(1) 본 협약에 의해 구속되는 회원국간의 관계

본 협약 및 이전 협약에 의해 구속되는 회원국간에는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회원국과의 관계

본 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회원국들은 단지 본 협약에 의해서만 구속받는 회원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에 최근의 조례에 따라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한 국가들은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본 협약에 의해 구속되며 본 협약에 의해서만 구속받는 회원국과의 관계는 최근 조례를 따른다. 그리고 본 협약에 의해서만 구속받는 회원국은 이전 협약 대신에 본 협약을 적용한다.

제32조: 특별 의결사항

연맹 회원국은 본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품종 보호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협정을 맺을 권리가 있다.

제10장 최종 결의사항

제33조: 서 명

연맹 회원국은 본 협약을 수용하는 시점에서 서명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본 협약에 대한 서명은 1992년 3월 31일 마감된다.

제34조: 비준, 수락, 승인 및 계승

(1) 회원국과 정부간 조직

(a)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회원국도 본 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b)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정부간 조직도 다음 사항을 갖출 경우 본 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i) 본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질 것

(ii) 모든 회원국들에게 육종가의 권리 인정을 한다는 자체법을 가질 것

(iii) 내부 규칙에 따라 본 협약에 동의하겠다는 위임을 받았을 경우

(2) 가맹 증서

본 협약에 서명한 어떠한 국가라도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겠다는 증서를 위임할 경우 본 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어떠한 국가나 정부간 조직도 본 협약을 승계하겠다는 증서를 위임할 경우 본 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비준, 수락, 승인 및 승계를 위한 증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사회의 권고

연맹 회원국이 아닌 국가나 어떠한 정부간 조직도 수락 증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체 법률이 본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이사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그 수락 증서는 제출될 수 있다.

제35조: 유보권

(1) 원칙

제35조 2항에 따라 본 협정의 유보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외 규정

(a) 제3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8년 법안의 주체인 국가가 본 협약의 주체가 된 시점에서 무성생식에 의해 재생산된 품종에 대하여 육종가의 권리 외에 산업소유권에 의해 품종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는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제도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

(b) 어떠한 국가라도 위에서 말한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승계 증서를 제출할 시점에서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해야 한다. 그러한 국가들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 보호될 속·종에 관한 법령 통보와 공포해야 할 정보

(1) 최초 통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승계 증서를 본 협약에 제출할 때 어떠한 국가나 정부간 조직도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i) 육종가의 권리를 규제하는 법령

(ii) 본 협약에 의해 구속될 시점에서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식물의 속·종 목록

(2) 변경 통보

다음의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고해야 한다.

(i) 육종가의 권리를 규제하는 법령의 개정

(ii) 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물 속·종의 추가

(3) 정보의 발행

사무총장은 각 계약당사자로 부터의 통보에 따라 다음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i) 육종가의 권리를 규제하는 법령과 법령의 개정

(ii) 제36조 1항 (ii)에 언급한 식물 속·종 목록과 제36조 2항 (ii)에 언급한 식물 속·종의 추가

제37조: 유효등록과 과거 법률의 폐지

(1) 유효 최초 등록

본 협약은 5개 회원국이 비준, 수락, 승인, 승계 증서를 제출하고 그 중 적어도 3개 국가가 1961/72 또는 1978년 법령의 주체국인 경우유효 증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발효된다.

(2) 유효 추가 등록

제37조 1항 이외의 국가나 정부간 조직은 그들이 비준, 수락, 승인, 승계 증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본 협약에 구속된다.

(3) 1978년 법령의 폐지

제37조 1항에 따라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1978년 법령의 승계 증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단, 본 협약이 이미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절차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승계 증서를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국가들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 협약의 개정

(1) 총회

본 협약은 연맹 회원국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회의의 소집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2) 정족수와 다수결

회의는 연맹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며 참석자 3/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

제39조: 폐기 통고

(1) 통고

어떠한 계약당사자라도 사무총장에게 통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통고가 접수된 즉시 그 사실을 모든 회원국에게 알려야 한다.

(2) 과거 법령

본 협약의 폐기 통고는 해당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고 있는 어떠한 과거 법령도 동시에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유효 날짜

폐기 통고는 그것이 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날짜로 부터 이듬해 연도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획득된 권리

폐기 통고의 효력발생 시점 이전에 본 협약에 의해 획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폐기 통고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 기존권리의 보호

계약당사자의 법률이나 본 협약 이전의 법령 또는 본 협약 외 연맹 회원국간의 어떠한 협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육종가의 권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이 제한할 수 없다.

제41조: 협약의 원본과 공식문서

(1) 원본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독일어로 각각 한부씩 작성되며 각 문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불어로 작성된 문서에 따른다. 원본은 사무총장이 보관한다.

(2) 공식 문서

본 협약의 내용은 관련 정부의 공람을 거쳐 사무총장이 아랍어, 화란어, 일본어, 스페인어 및 이사회가 지정한 기타 언어로 공식문서를 작성한다.

제42조: 수탁 기능

(1) 복사본의 전송

사무총장은 본 협약이 인정하는 외교회의의 대표자인 모든 정부와 정부간 조직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타 국가 또는 정부간 조직에 본 협정문의 보증 복사본을 전송할 수 있다.

(2) 등록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의장에게 본 협정을 등록한다.

본인은 이 문서가 1961년 12월 2일에 최초 작성되어 1972년 11월 10일, 1978년 10월 23일, 1991년 3월 19일에 제네바에서 개정되고 1991년 3월 4일에서 3월 19일 동안 제네바에서 개최된 「식물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외교회의를 거쳐 동년 3월 19일 제네바에서 조인된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진정한 문서임을 증명함.

1991년 7월 1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사무총장
Arpad Bogsch

제 4 부

식물 신품종 보호의 기술적 기준

빈 면

제 4 부

식물 신품종 보호의 기술적 기준

I. 품종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1) 육종가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종자 및 식물산업의 실제적인 상황하에서 보호되는 품종의 샘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권리의 내용과 보호될 품종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떤 특정의 샘플이 정말로 특정의 보호받는 식물품종이 샘플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2) 식물품종보호제도가 식물 육종에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식물육종가는 그들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특정의 샘플이 보호받는 품종의 샘플인지 아닌지를 알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식물육종가의 권리제도는 고도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어떤 품종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i) 그 품종은 현존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품종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품종은 필히 다른 품종과 구별되어야 한다.

(ii) 그 품종은 특징을 열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동질적이어야 한다.

(iii) 그 품종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반복되는 재생산이나 복제 이후에도 당초의 중요한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한 품종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신청서를 제출하는 품종은 그 품종에 대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평가하는 동안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한 품종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추가적 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i) 그 품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상업적 독창성). 보호의 조건으로서 새로운 품종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품종(과거품종)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 품종을 마음대로 이용해 오던 사람들의 이익은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품종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품종보호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상업화된 적이 없는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어야 식물품종보호제도가 인정을 받게된다.

(ii) 그 품종은 적절한 품종명을 부여받아야 한다. 사용자나 소비자들이 어떤 샘플이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식물품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유통되는 품종에는 다른 품종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나 소비자들이 그 품종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UPOV 협약은 품종보호를 위한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채택한다.

- 상업적 신규성

- 구별성
- 균일성
- 안정성
- 적절한 명칭

(5) UPOV 협약은 육종가의 권리가 UPOV 회원국에서 조화된 기준에 의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육종가의 권리인정을 위해 위에서 말한 5가지 기준 이외의 추가적인 기준이나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6) 대부분의 UPOV 회원국에서는 식물품종보호가 품종 심사와 종자의 품질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식물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업적 신규성을 제외하면 이러한 모든 기준은 어떤 품종이 상업화를 인정받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7) 특허권 보호의 기준이 되는 발명단계(또는 명료성)이나 이른바 전국품종목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품종의 상업화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장점이나 경제적 유용성은 식물품종보호를 위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2. 개별적 기준

(1) UPOV 협약의 최초 조례인 「1961 조례」에서 확립된 신품종보호의 기본적 기준은 그 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말이 바뀐 것은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여기서는 「1978 조례」에 기초한 보호의 기준에 대해 분석해 본다. 「1991 조례」에서 결정된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개될 것이다.

상업적 신규성

(2) 「1978 조례」의 제6조 1항(b)에 따르면 연맹 회원국에서 보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새로운 품종은 육종가나 그 권리 승계자의 양해하에 자국의 영토내에서(다른 나라의 영토내에서는 4년이상) 판매나 유통을 위해 제공된 적이 없어야 한다.

(3) 특허제도와는 달리 그 품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더라도 그 신규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도 품종 물질을 입수하지 않고서 단지 정보나 설명에 바탕을 두고서 그 품종을 재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법정은 최근 보호신청서를 제출하기전 여러해 동안 하이브리드 옥수수 종자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옥수수 근친교배 계통이 신규성을 지니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 계통은 일반인이 입수할 수 없도록 격리되었으며 폐쇄된 경로내에서만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만약 그 법률이 「1991 조례」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다른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4) 해외에서의 상업화에 대한 양해 기간으로 덩쿨식물에 대해서는 6년, 다른 종에 대해서는 4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은 다른 나라에서의 보호를 신청하든 않든 보호권을 결정하기 전에 검사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신청기간이 포함된다.

(5) 보호에 대한 신청을 하든 안하든 품종보호를 신청하기 전에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978 조례」를 적용받는 회원국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일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업화가 된다고 해도 신규성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1 조례」하에서는 모든 계약당사자가 이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구별성

(6) 최초의 품종으로 부터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을 경우 그 새로운 품조은 보호신청를 할 당시 이미 알려진 다른 품종과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특성에 대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품종도 육종방법이나 육종가에 의해 사용되는 최초의 물질과 관계없이 구별될 수 있다.

(7) 어떤 품종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i) 구별성 검사는 전세계적인 검사이다. 고려 대상이 되는 품종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외국의 어떤 품종이 구별성이란 목적과 관련이 되고 어떤 것이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알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캔서스에서 밀을 검사할 때 북서유럽의 밀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검사자는 병의 종류와 다른 환경적 차이가 워낙 크기때문에 북서유럽 품종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ii) 새로운 품종의 경우 「1978 조례」하에서 세계 어디서나 신품종보호신청을 하게되면 비록 신청은 그 품종을 접수받은 기관에서만 행해지지만 신청시점부터 그 품종은 널리 알려지게 된다. 「1991 조례」에서는 세계 어디서나 행해지는 품종보호신청이나 공식적인 품종등록신청은 공통적인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 후에 신청이 거절될 경우 신청의 대상이 되는 품종은 구별성이란 목적에 고려되지 않는다.

(iii) 문헌상에만 있고 실제로는 완전히 멸종된 품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그 품종이 과거에 보호를 받던 품종이 아닌한 품종보호에 필요한 정도로 상세하게 그 품종의 특성을 기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8) 어떤 특성이 품종을 구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경우 그러한

특성은 쥽요하다고 이해된다. 그 특성이 농업적 장점과 관련이 있어야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UPOV 검사기준에서는 DUS 검사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특성을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품종의 농업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특성이 DUS 검사에도 적합하다면 그것은 중요한 특성으로 고려된다. 그와같은 예로서는 成熟期, 草長, 病蟲害 抵抗性을 들 수 있다. 이때 저항성은 정확하게 검사될 수 있어야 하고 구별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경우에 한한다.

(9) 품종의 우수성이나 유용성은 품종보호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품종의 우수성이나 유용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시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식식물의 경우 우수성을 논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형태와 색에 관한한 그것은 취향의 문제이다. 품종보호제도의 입장은 품종의 우수성이나 유용성은 그 품종의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식물품종보호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의 성질은 아니다.

(10) 품종보호를 위하여 유사 품종간의 최소한의 구별은 여러해 동안 품종간의 최소한의 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해 왔다. 그 개념은 품종보호의 한 측면을 잘 성명해 준다. 최소한의 차이가 클수록 더 강하게 보호된다. 품종간의 차이는 특별한 성격의 중요도와 주어진 성격에 대한 품종간의 차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그마한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표절을 인정해 주는 격이되어 원래 품종를 개발한 육종가의 잠재적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품종간의 더욱 큰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독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따라 다른 사람이 개발한 개량된 품종의 출현을 충분히 저지하게 될 것이다.

균일성

(11) 새로운 품종은 유성생식 또는 영양번식에 대한 특별한 특징에 대하여 동질적이어야 한다.

(12) 일정한 수준의 균일성은 명확히 정의될 품종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사용될 품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성질이다. 균일성을 상실하게 되면 최종생산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13) 균일성의 정도는 품종번식의 특별한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 글의 III. 15~22에서는 현재 균일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안정성

(14) 새로운 품종은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새로운 품종은 반복되는 재생산 또는 증식 후 또는 각 순환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육종가가 정의한 것과 똑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육종가는 품종의 특성을 재생산 또는 복제의 특별한 순환과정을 정의해야 한다.

(15) 보리나 벼처럼 몇몇 자가수정 식물의 경우 품종특성이 흔들리지 않고 유전적으로 고정되었을 때 육종이 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 최초 수정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야만 새로운 품종이 탄생한다. 적용시기에 안정성을 결여한 품종은 미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충분한 실증시험을 거치지 않고 개발된 불완전 발명의 경우처럼 거절당하게 된다.

(16) 균일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보호권이 인정된 이후에도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만일 권리보유작가 그 권리가 허용되었을 당시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유지시키는데 실패한다면 협약은 그 품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명칭

(17) 새로운 품종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적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UPOV 협약의 「1978 조례」 제13조 1항). 유전적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식물학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품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

음과 같은 결과는 품종명이 유전적 명명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부터 나온 것이다.

(i) 품종명은 그 품종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ii) 품종의 보호가 만료된 후에는 상표와 같은 다른 권리에 의해 자유로운 품종명의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iii) 품종명은 그 품종의 기원이나 소유권 또는 품종의 증식이나 기타 특별한 물질의 기원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상품의 거래 기원을 나타내는 것은 상표의 기능이다. 그러나 등록된 품종명과 함께 상표, 상표이름, 또는 유사한 표시를 첨가하는 것은 인정된다.

(iv) 국가기관이 해당 품종명이 그 나라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품종은 회원국에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UPOV 회원국의 국가대리기관은 품종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안된 품종명이 다른 국가의 대리기관에 의해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8) 품종명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1978 조례」의 제13조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i) 숫자만으로 품종명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 아닌 곳에서는 숫자만으로 명칭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ii) 품종명은 품종의 특성, 가치 및 기원이나 육종가의 신원을 오도하거나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iii) 품종명은 각 연맹회원국에서 동일한 식물의 종이나 유사종의 품종에 대해 지정한 어떠한 명칭과도 달라야 한다.

(19) 위의 조건이 모든 회원국에서 똑같이 해석되게 하기 위해서 「1978 조례」 제3조 5항에 의하여 UPOV 이사회는 1987년 제21차 정기회의에서 품종명명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동 권고안은 동일한 품종에 대하여 동일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3. 검사 실시

DUS 검사의 실시

(1) DUS 검사는 기본적인 기술적 검사로서 포장시험, 샘플링, 관찰, 계측, 자료분석 및 평가로서 구성된다. 후보품종은 표본품종과 함께 시험포장에서 재배하여 그 특성을 관찰하고 측정하여 모든 기준을 검사한다. 「1991 조례」에서는 그 특성이 주어진 유전자형이나 유전자형의 결합으로 부터 파생되어야 한다. 즉, 그 특성은 유전되어야 한다.

(2) 다음은 DUS 검사의 기본적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i) 가능한한 그 결과는 시험장소나 환경적 영향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조사대상 형질은 환경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특성이어야 한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사조건이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ii) 유전자 구조나 품종의 번식 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영양번식, 자가 및 타가수정종, 그리고 하이브리드 품종의 DUS 검사 방법은 매우 다르다.

(3) UPOV 협약의 주된 목적은 국제적으로 조화된 원칙에 따라 새로운 식물품종보호를 장려하는 것이다. DUS 검사 포장에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UPOV는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른바 UPOV 검사지침)을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발간하였다. 검사지침은 매년 발간되고 있다. 현재 140개의 상이한 식물의 속이나 종에 대해 검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검사지침은 최근의 품종변화나 육종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된다. 식물의 속이나 종에 대한 현행 또는 마련코자 하는 검사지침은 부록 I에 마련되어 있다.

(4) 검사지침은 UPOV의 기술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어 발간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술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작물 기술작업반(TWA)
- 과일 기술작업반(TWF)
- 장식 및 산림수목 기술작업반(TWO)
- 채소 기술작업반(TWV)
- 자동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작업반(TWC)

(5) 자동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작업반(TWC)을 제외한 모든 기술작업반은 개별 종에 대한 검사지침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자동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작업반은 품종검사에 적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나 전산화에 대해 다른 기술작업반이 직면하게 되는 공통적인 업무를 다룬다.

(6) 각 기술작업반은 회원국의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술작업반이 어떤 종에 대한 확립된 검사지침을 결정할 경우 어느 한 국가로 하여금 한 회기 이상의 기간 동안에 검사지침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을 준비하도록 요청한다. 일단 기술작업반이 그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검사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국가기관 외의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제전문기관(식물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식물육종가 협회, 국제종자거래연합 등)에 배포한다. 기술작업반의 의장은 기술작업반의 회기중 토론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은 전문기구로 부터 기술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육종가의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접합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술작업반은 이들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검사지침 초안을 재검토한 후 기술위원회에 제출할 검사지침의 최종안을 마련한다. 기술위원회는 최종안을 검토하고 수용할만 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해당 종의 공식적인 UPOV 검사지침으로서 채택한다.

UPOV 검사지침

(7) UPOV 검사지침서는 다음의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지침서의 대상: 이 장은 검사 지침서의 적용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 일단 라틴 이름이 붙여진 식물분류는 검사의 대상이 된다. 간혹 특별한 재생산 방법으로 개발된 품종이나 특별한 최종 이용 목적을 가진 품종에만 적용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ii) 필요한 물질: 이 장은 DUS 검사를 위해 성분검사 기관에 제출될 식물 물질의 양이나 질을 밝히고 있다.

(iii) 검사의 실시: 이 장은 검사의 기간, 검사장 수, 식물의 크기와 수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수행되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iv) 관찰 방법: 이 장은 관찰될 샘플의 크기, 관찰 시기와 조건 등을 포함하여 어떻게 특성을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v) 품종의 분류: DUS 시험을 행할 때 후보품종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지는 표준품종과 비교된다. 따라서 후보품종은 비교를 쉽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는 주요 특성에 따라 몇개의 군으로 분류된다. 이 장은 특성표에 포함된 특성이 어떻게 분류되는가는 설명한다.

(vi) 기호의 특성: 이 장은 검사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의 성격과 기호를 설명한다.

(vii) 특성표: 이 장은 검사지침서의 본론 부분이다. 여기에는 전자적 자료 정리를 위하여 관찰되어야 할 특성을 열거하고 예시된 품종과 주석을 곁들여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열거된 특성은 한 품종을 다른 품종과 구별하거나 품종의 동질성이나 균일성을 조사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그 특성은 정확하게 인식되고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 그 특성들이 관찰되고 측정된 순서에 따라 연대

순으로 열거된다. 병저항성과 성능 특성이나 생태적 특성은 특성표의 맨 마지막에 함꺼번에 분류된다.

(viii) 특성표에 포함되는 특성의 설명: 이 장은 특성표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성 중에서 특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형태 등에 대해서는 도해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병 저항성의 경우는 그러한 검사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른 검사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적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저항성의 경우는 동일한 혈통이나 病原菌型을 사용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ix) 문헌: 이 장은 DUS 시험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검사지침서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된 문헌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x) 기술적 설문서: 대부분의 UPOV 회원국에서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대 기술적 설문서의 형식으로 된 기술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러한 질문은 국가기관에게 후보품종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사기관이 시험설계를 하고 후보품종과 비교하기 위한 표준품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장은 DUS 시험이 자료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해 비슷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특성의 성질

(8) 종에 대한 개별 검사지침은 검사와 지침에 관련된 포괄적인 일반적 원리를 다룬 「검사지침에 대한 총체적 소개(문서 TG/1/2)」와 연계하여 읽혀져야 한다. 그것은 총제적 소개에 대한 어떠한 원리를 기술하고 있다.

(9) 질적 특성이란 가능한 상태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 불연속적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의에 맞지 않는 몇몇 특성에 대해 발현될 수 상태가 서로 완전히 다를 경우 질적 특성으로 간

주될 수 있다. 색(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예를들면 흰색 또는 노란색), 꽃의 모양(홑 또는 겹), 콩 종자의 모양(둥근형 또는 주름잡힌 형) 등이 질적 특성의 예가 된다.

(10) 양적 특성이란 일차원적인 잣대에 의해 측정되는 특성으로 한 극단으로 부터 다른 극단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낸다. 양적 특성은 표시를 위하여 수많은 상태로 쪼개질 수 있다. 식물의 생장력(매우 약함에서 매우 감함까지), 초기 새싹의 수(매우 적음에서 매우 많음까지), 크기(매우 작음에서 매우 큼까지) 등은 양적 특성의 예이다.

(11) 분리평가되는 특성이라 할지라도 길이/폭 비율과 같이 하나의 지표로 결합될 수도 있다. 결합된 특성도 다른 특성처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구별성 검사

구별성의 기준

(12) 만일 두 품종이 한 곳 이상의 검사 장소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분명하면서 일관성이 있을 경우 두 품종은 구별된다고 간주한다.

질적 특성

(13) 진정한 질적 특성의 경우 각각의 특성이 두가지 서로 다른 상태로 표현된다면 두 품종간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질적으로 취급되는 특성의 경우 어떤 발생가능한 변동도 구별성을 정의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계측가능한 양적 특성

(14) 구별성이 계측가능한 특성에 의존할 때 그 차이가 1%의 오차

확률을 가지고 발생한다면 최소자승법의 입장에서 그 차이는 명확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그 차이가 2년 연속해서 또는 3년중 2년에 걸쳐 똑같은 모양으로 발생한다면 그 차이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자동화와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작업반(TWC)에 의해 검토중에 있다. 왜냐하면 검사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실패하여 두 품종간에 구별성이 없다고 하는 판정이나 예를들면 일년동안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나 심지어 반대의 부호를 가지고서도 유의성이 없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의 2 x 1% 법칙하에서 그러한 차이는 구별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화와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작업반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합된 多年分析法(Combined Over-Years Analysis)을 고안해냈다. 다른 기술작업반은 현재 그들이 맡고 있는 종에 대하여 그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균일성 검사

(15) 문항 II. 11에서 언급한 품종의 유성생식 또는 영양번식에 대한 특별한 특징에 대하여 균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품종의 변이는 그 품종의 육종체계, 이따금씩 나타나는 품종의 혼합에 기인한 변형, 돌연변이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품종이 동질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품종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구별성을 평가하며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품종의 변이가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종의 번식체계가 영양생식인가 자가 또는 타가수정인가에 따라 그에 대응한 허용범위를 필요로 한다.

영양생식 품종과 순수 자가수정 품종

(16) 영양생식에 의해 번식되는 품종이나 순수하게 자가수정에 의해 번식되는 품종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샘플의 크기에 대

응한 最大許容 變型數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 샘플의 크기별 최대허용 변형수

샘플의 크기	最大許容 變型數
5	0
6-35	1
36-82	2
83-137	3

* 샘플 크기가 137개 이상일 경우의 최대허용 변형수는 현재 자동화와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작업반에서 검토하고 있음.

자가수정을 주로 하는 품종

(17) 자가수정을 주로하는 품종이란 완전히 자가수정 방법에 의해 번식하지 않지만 작가수정 품종에 준하는 검사를 받는 품종을 말한다. 이러한 품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허용치가 필요하며 위의 표에서 허용되는 최대 변형수는 영양번식 품종이나 완전 자가수정 품종의 두배 정도이다.

합성품종을 포함한 타가수정 품종

(18) 타가수정 품종은 보통 영양번식 품종이나 자가수정 품종에 비해 품종내의 변이폭이 크며 간혹 변형을 구별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떤 고정된 허용한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품종검사를 할 때 이미 알려진 비교 품종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상대 허용한도를 이용한다.

(19) 계측가능한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서 표준편차나 분산을 사용한다. 계측가능한 특성에 대해서 만일 검사대상 품종의 분산이 비교에 사용되는 품종의 평균분산의 1.6배를 초과하면 그 품종

은 균질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20) 육안으로 평가되는 특성은 계측가능한 특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육안으로 판단하여 검사대상 품종의 변형 식물수가 비교 대상이 되는 품종의 그것보다 5% 이상의 확률오차를 가지고 유의할 만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이브리드 품종

(21) 단교잡 품종은 자가수정을 주로하는 품종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허용한도는 근친교배 식물에 대해 허용되는 범위와 같이 적용된다. 판단기준으로서 변형 정도를 비율로 고정시킬 수 없으며 종이나 육종방법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시험을 방해할 정도로 근친교배 식물의 비율이 높아서는 안된다.

(22) 다른 범주의 하이브리드 품종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을 분리하는 것이 그 품종의 특성에 비추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일 분명히 분리되는 특성의 유전질이 알려져 있다면 이 특성은 질적 특성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만일 언급한 특성이 그렇게 분명한 특성이 아니라면 다른 타가수정 품종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즉, 균질성은 알려진 품종의 그것과 비교되어야 한다. 근친교배 또는 母本의 허용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교잡 품종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안정성 검사

(23) 구별성이나 균일성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안정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2-3년 이상이 소요된다. 안정성은 품종을 유지하기 위한 육종가의 노력에 크게 의존한다.

(24) 일반적으로 제출된 샘플이 동질성을 보일 경우 그 물질은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별성이나 균일성을 검사하는 동안에도 안정성에 조심스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정성을 검사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계세대를 재배해야 하며 앞서 공급한 물질과 동일한 특성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種子群이 필요할 때도 있다.

보호를 위한 다른 기준의 검사

(25) DUS 검사가 포장시험의 형태로 수행될 동안에 상업적 독창성이나 품종명의 적절성과 같은 기타 기준은 주로 신청자나 관심있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검사된다.

상업적 독창성에 대한 검사

(26) 통상적으로 신청자가 품종보호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대상이 되는 품종을 직접 또는 양해에 의해 상품화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신청자(육종가)의 책임이다. 관할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되는 보충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27) 거꾸로, 관련기관은 직권에 의해 관심있는 집단으로부터 품종의 독창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일단 관련기관이 품종의 독창성을 부인하는 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신청자를 소환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도록 요구한다. 만일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호신청은 독창성의 결여로 인해 거절된다.

품종 명칭의 검사

(28) 무엇보다도 품종 명칭은 같은 종의 이미 존재하는 품종이나 유사 품종의 명칭과는 달라야 한다. UPOV는 이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종의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따라서 품종 명칭에 대한 검사는 주로 같은 종이나 유사종에 속하는 품종에 대하여 현재 사용중인 명칭중 같은 이름이나 유사한 이름을 찾는 작업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할기관은 관련되는 품종 명칭을 수집하고 그들을 데

이타베이스에 보관한다.

(29) 관할기관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진 탐색작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안된 명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모든 관심있는 집단을 관할기관에 초청하여 제안된 품종 명칭에 대한 반대의사를 제기하도록 한다.

(30) 신청된 품종이 모든 UPOV 회원국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보호되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UPOV 협약의 「1978 조례」 제1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 명칭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어떠한 대리기관도 그 명칭을 통보한 기관에게 명칭의 등록에 대한 관찰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31) 일단 제출된 품종 명칭이 관할기관에 의해 거절되면 신청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품종 명칭을 제안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만일 그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은 철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정보의 발간

(32) 다른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보호신청과 관련하여 취해진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호권 인정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심있는 주체들에게 반대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UPOV 회원국에서는 품종보호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기 에 앞서 신청자 또는 육종가의 이름, 제안된 명칭, 품종에 대한 설명 등 신청된 품종에 대한 정보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관심있는 주체들에 의해 제안된 어떠한 정보도 상업적 독창성, 품종의 구별성, 제안된 품종 명칭의 적절성을 검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DUS 시험의 합리화

(1) DUS 시험을 목적으로 포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UPOV 회원국은 포장시험과 연관된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광범위한 DUS 시험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 시험 포장, 잘 훈련된 직원, 후보품종을 비교하는데 사용할 표준품종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비록 신청수수료나 검사비를 통해 비용이 회수되기는 하나 보호되는 식물종의 목록이 확대됨과 동시에 모든 필요한 기술적 검사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호되는 종을 추가시킬 때 마다 표준 품종을 정하고 수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표 4-2 보호를 위한 5가지 기준과 검사 방법

기 준	검 사 방 법
상업적 독창성	신청자 진술 제3자로 부터의 정보 또는 기타 정보
구별성 균일성 — DUS 시험 안정성	포장시험을 수행하는 주체 - 관할기관 또는 - 관할기관이 지정한 타 기관 - 신청자
적절한 명칭	제3자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관할기관이 검색 회원국간의 정보교환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술적 검사 비용을 줄이고 보호될 식물종의 목록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대안이 가능하다.

- 기술검사에 대한 국제협력
- 육종가와의 협력

대안 Ⅰ: 기술검사에 대한 국제협력

(3) UPOV 역사의 맨 초기부터 검사를 협력하기 위한 국제적 체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신청자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협력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각 회원국에 검사를 신청할 때마다 검사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관련기관이 검사 대상이 되는 식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축적하지 못하였거나 검사를 위한 표준 품종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경우 식물종의 보호확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4) 회원국간의 국제협력은 종종 품종에 관한 자료의 교환으로부터 시작되어 쌍무협력에서 다자간 협력관계로 발전한다. 기술검사에서 궁극적인 형태의 국제협력은 하나의 통일된 시험체제를 구축하여 품종이나 신청자의 기원과는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에 속한 모든 품종에 대해 많은 다른 대리기관을 대신하여 한 대리기관이 모든 기술적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몇몇 유럽회원국간에는 여러가지 다자간 협력체제가 수립되어 주어진 식물종에 대한 모든 기술적 검사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 예를들면 영국은 모든 사과 품종에 대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스웨덴 및 스위스를 대신하여 기술적 검사를 수행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협정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그 나라의 수많은 고유의 식물종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영국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UPOV 회원국간에는 327개 식물계통에 대해 그와같은 협정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5) UPOV의 이사회는 품종검사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모델행정협정을 채택하였다.

(6) 또한 UPOV 사무국은 매년 그들의 시험 시설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회원국의 명단을 담고 있는 국제검사 협력 상황을 요약한 문서를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다.

(7)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UPOV의 기술위원회는 UPOV 회원국간의 검사방법을 조화시키고 정보교환과 기술적 검사의 통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UPOV는 모든 주요 식물종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지침서의 발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채택하였다.

- 검사결과에 UPOV 요청서와 검사결과의 요청에 대한 UPOV 답변
- 기술적 검사에 대한 UPOV 보고서와 UPOV 품종 설명서
- 기술적 검사에 대한 UPOV 내부보고서

UPOV는 현재 중앙집중된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러한 데이타베이스는 유선에 의해서나 특히 품종 명칭과 관련하여 자료 교환의 속도와 양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CD-ROM 제품을 정기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하다.

대안 Ⅱ: 육종가와의 협력

(8) 관할기관이 공식적인 시험을 수행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육종가는 관할기관과의 협력이 요청된다. UPOV 협약의 제7조 2항과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마련되어 있는 국가식물품종보호법하에서 육종가는 국가시험기관에 모든 필요한 정보, 문서, 증식물질 또는 종자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9) 신품종 육종가가 후보품종을 지정된 표준품종을 함께 재배하여야 하는 시험을 실시하도록 요청받는 경우에는 육종가와의 협력이 보다 진전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DUS 검사를 위한 품종의 평가는 육종가와의 협력에 의해 공식기관의 검사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육종가에 의해 기록된 자료도 검사관의 판단자료로 사용된다.

(10) 호주, 카나다, 일본, 뉴질랜드 및 기타 회원국에서는 검사관의 포장 조사에서 육종가와의 협력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검사대상이 특수한 種이어서 전문적인 육종가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형

태의 협력이 특히 유용하다. 육종가가 제공하는 어린 식물에 과일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익은 과일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과목의 경우에는 이러한 접근법이 더욱 효과가 있다.

(11) 특히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에 있어서는 육종가에 의한 자체 품종의 시험을 오랜 기간동안 예외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한 검사는 인정을 해오지 않았다. 그 주요한 이유로서는 육종가에 의해 제공되는 틀린 자료를 바탕으로 육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식물육종가의 권리인정에 따르는 법적 확실성을 최대화하고 통상적으로 훈련받는 식물분류가가 아닌 육종가가 신청을 쉽게하기 위한데 있다. 검사 비용의 과다와 육종가 기구에 의한 품종보호 대상의 확대 요청은 모든 품종이 정부 전문가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는 많은 UPOV 회원국의 기존의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러 UPOV 회원국에서는 육종가의 의해 수행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UPOV의 엄격한 조건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12) UPOV의 「1991 조례」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때 부터 모든 기존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 법에 의해 구속되는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모든 식물의 속과 종에 대해 보호를 양허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DUS 품종검사에서 육종가와 관할기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형태의 협력은 회원국들이 협약의 「1991 조례」가 정하는 강제규정을 수용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UPOV),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March 19, 1991.

Office of UPOV, "An Overview of Plant Variety Protection in the World(The Development of UPOV: The Form of Protection: Implementation at National Level)," paper presented at 「Regional Seminar on the Nature of and Rational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under the UPOV Convention」, Sep. 15-17, 1993, Beijing, China, 1993.

_____, "Technical Criteria for Protection," paper presented at 「Regional Seminar on the Nature of and Rational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under the UPOV Convention」, Sep. 15-17, 1993, Beijing, China, 1993.

Vice Secretary-General of UPOV, "What is Plant Variety Protection," paper presented at 「Regional Seminar on the Nature of and Rational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under the UPOV Convention」, Sep. 15-17, 1993, Beijing, China, 1993.

연구자료 D95/번역 자료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찍은날 1994. 12. 펴낸날 1994. 12.
발행인 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4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